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나20199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나20199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53016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담당변호사 이승훈

변론 종결 2024. 9. 12.

판결 선고 2024. 10. 17.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53016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피고와 B, C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2023. 5.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피고가 망인(C와 피고의 어머니인 D)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망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던 반면, C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있었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참고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혜정

판사김대현

판사강성훈

별지